

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109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10998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1. 23 선고 2022가합3013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복

피고, 항소인E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0. 24.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1. 23. 선고 2022가합30133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망 K과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제1심 공동피고 D과 피고 사이의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J에게 또는 제1심 공동피고 D, F, G에게 제1심 판결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 J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A의 제1심 공동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 및 제1심 공동피고 F, G, H, I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1면 제14행부터 제12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계금 채무에 해당하고, 차용증에 날인된 망인의 인장은 제1심 공동피고 D이 권한 없이 날인한 것이며, 고액의 대여금 또는 계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제1심 공동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과 제1심 공동피고 D이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6호증)에 망인과 제1심 공동피고 D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이상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차용증의 내용은 망인과 제1심 공동피고 D이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민법 제413조 참조), 갑 제50, 51호증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B에게 매월 200만 원, 원고 C에게 매월 8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기도 한 점, 망인은 평소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자신의 통장과 인감을 맡기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는 등으로 자신의 인장을 사용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2호증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과 제1심 공동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또는 계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당초 2020. 4. 20.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같은 달 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것인데, 제1심 공동피고 D과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21. 5. 17. 이를 말소하였다가 같은 달 26. 다시 등기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시점을 2020. 4. 20.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는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와 채권최고액도 서로 달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2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 제13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와 망인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만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D와 망인은 제2, 3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D와 망인은,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4.경에는 둘째 아들의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공동피고 D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헌 집을 사고 이를 고쳐주는 사업을 하거나, 갯돈을 태워주는 데에 빌린 돈을 사용했다.', '집을 짓고 고치고 해야 하므로 돈이 없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진술한 점(을 제12호증), ③ 제1심 공동피고 D와 망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심 공동피고 D와 망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력을 회복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2,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3면 제20행부터 제13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제1심 공동피고 D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다가 2021년경에 이르러 담보를 요구하면서 제2,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점, 제1심 공동피고 D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지역에서 제1심 공동피고 D와 망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무렵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제12호증),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D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나 그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그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봉길

판사장정태

판사이혜성